

의안번호	2200286
의 퇴 인	이연희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 계 번호	24A0777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에 2억 2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 2,500만원(연평균 2억 2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(안 제8조)	225	225	225	225	225	1,125	225

주: 본 추계 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1항 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	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의 3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”, “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1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” 등을 추가함	재량규정
2	안 제8조제2항 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	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내용에 “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”을 추가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1항 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	○	—
2	안 제8조제2항 (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확대”로 하며, 현행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은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의 3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”,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1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” 등을 추가하고,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내용에 “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”을 추가함
 - 현행법과 개정안의 교육취약계층 및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2]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

교육취약계층		발명교육 지원 내용	
현행	개정안	현행	개정안
·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·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·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	1.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의 3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1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 8.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대상	1.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.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.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·운영 4.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	1.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.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.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·운영 4.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.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특허청의 현행 사업이 개정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, 현행 사업이 재량지출성 사업이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업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관련 사업으로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(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), 국가 발명인재관 운영(교원·학생 발명교육) 등이 있음

[표 3] 현행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(내역사업)	2021결산	2022결산	2023결산	2024예산
발명교육 활성화(초·중·고)				
－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(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)	1,020	1,020	1,020	215
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(국가발명인재관 운영-교원·학생 발명교육)	8.8	6.5	10	10

자료: 특허청

- 개정안은 교육취약계층에 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의 3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” 등을 추가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예산(2024년 예산 기준 2억 2,500만원) 수준으로 가정함
 - － 개정안과 유사한 제21대국회의 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122379)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2023년 예산(10억 3,000만원)의 50%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나, 동 개정안에서는 2024년 예산이 감액된 점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가정함
- 개정안에 따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2억 2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 2,500만원으로 추계됨
 - 본 추계 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확대	225	225	225	225	225	1,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